

지방세다운 지방소득세, 성숙한 지방자치의 디딤돌

구균철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1. 지방재정의 당면 위기
2. 현행 지방소득세제를 둘러싼 쟁점들
3. 지방소득세의 확대 방안
4.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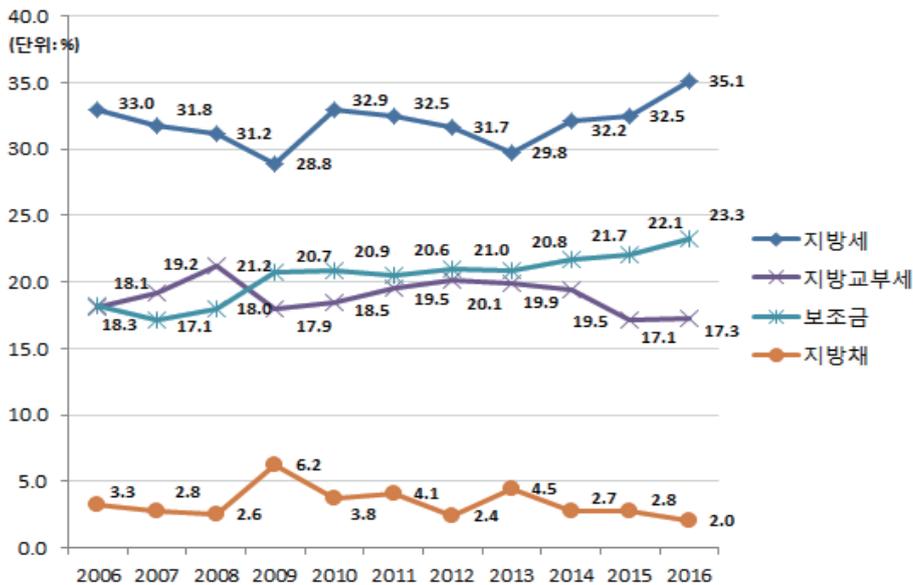
01 지방재정의 당면 위기

■ (세입측면) 정체된 지방세 수입과 점증하는 국고보조금

○ 지방세 비중의 정체와 이전재원 증가로 세입분권이 약화된 상황

- 지난 10년 동안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의 비중은 정체
 - 2006년~2016년 동안 지방세 수입의 비중은 33.0%에서 35.1%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으나, 국고보조금 비중은 18.3%에서 23.3%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그림 1〉 참조)
 - 다시 말해 해당기간 동안 국고보조금의 증가율은 8.5%였는데 비해 지방세 수입의 증가율은 6.1%에 불과함

〈그림 1〉 세입예산 항목별 추이



주: 1) 2006년~2015년은 일반+특별회계 순계 최종예산, 2016년은 당초예산 기준임
 2) 2014년~2016년 세외수입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를 합친 규모임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구 예산개요)」, 각 연도

■ (세출측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자체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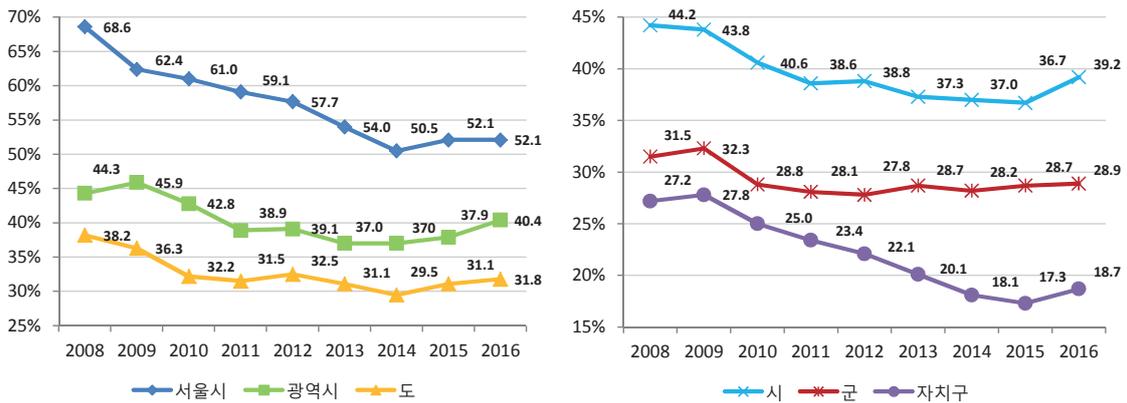
○ 자체사업예산의 감소로 세출분권이 질적으로 약화된 실정

- 비슷한 시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판단하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자체사업 비중은 급격히 축소



- 자체사업 비중은 사업예산이 처음 시작된 2008년 46.1%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에는 40.1%에 이르고 있음(〈그림 2〉 참조)
- 자치단체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본청의 자체사업 비중 하락이 가장 크고 자치구의 하락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그림 2> 자체사업예산 비중의 추이



주: 자치단체 총계(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대비 자체사업 예산임
 자료: 지방재정365(<http://lofin.moi.go.kr/portal/main.do>)

02 현행 지방소득세제를 둘러싼 쟁점들

■ 지방소득세수의 지역간 편중성

○ 지방소득세 세수의 시군간 편중성은 지방세목 중 가장 높은 상황

- 대부분의 도지역에서 시군간 지방소득세수의 편중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임
- 지방소득세 세원이 모든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이미 주지하는 바임
- 지방소득세는 특광역시에서는 광역세지만 도지역에서는 기초세라는 특성으로 인해 도지역에서 기초 자치단체인 시군간 지방소득세 세수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시군간 세수의 변이계수를 보면 지방소득세가 가장 큰 수치를 보이고 있음(〈표 1〉 참조)
- 이러한 현상은 세수의 편중도를 어떤 다른 지수로 측정하든지 간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표 1> 도별 기초지자체 세수의 시군간 편중도(변이계수)

도명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법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경기	1.138	0.806	0.682	0.707	1.507	1.102
강원	1.007	1.167	1.163	0.815	1.256	1.138
충북	1.636	1.577	1.476	1.379	1.745	1.952
충남	1.402	1.208	0.970	1.011	1.437	1.356
전북	1.219	1.457	1.319	1.206	1.263	1.464
전남	1.420	1.158	0.932	0.919	1.678	1.213
경북	1.711	1.315	1.220	1.075	1.911	2.093
경남	1.646	1.474	1.341	1.272	1.642	1.634

자료: 2015년도 각 시군 자료

○ 지방소득세제의 누진세율체계가 세수의 편중성을 증폭

- 지방소득세제가 누진세율체계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간 지방소득세 세수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경향
 - 지방소득세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구간에 속하는 과세대상이 주로 수도권과 주요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할 때보다 세수의 편중성이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음

■ 도지역에서 지방소득세 과세권의 불합리성

○ 적어도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광역정부차원에서 행사하는 것이 이론에 부합

- 원칙적으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일정부분 과세권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상위정부차원에서 과세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점은 학계에서 정설¹⁾
- 우리나라 도지역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권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사하고 있어 이론에 배치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어느 수준의 지방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은 우선 협소한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세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세원의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법인기업)의 특성상 기초정부보다는 집적경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광역정부차원에서 법인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시군간 물리적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조세귀착으로 인한 역외지역으로의 조세수출 문제도 존재
 - 법인지방소득세의 최종부담은 법인의 소유자, 근로자,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기초자치단체에 세수가 전액 귀속될 경우에 조세수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1) Boadway, R. and Shah, A., "Fiscal Federalism: Principles and Practice of Multiorder Govern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174.



- 특히, 법인지방소득세제를 운영 중인 연방제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시군간 물리적인 거리가 멀지 않아 이러한 조세수출 문제는 그 어느 나라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경기변동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수의 불안정성

○ 대기업이 입지한 지역의 법인지방소득세수는 해당 특정기업들의 영업활동과 실적의 변동성을 그대로 반영

- 법인지방소득세수가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세수의 상당부분을 소수의 특정법인기업들에 의존하게 된다면 해당 기업의 영업활동과 실적의 변동성이 그대로 세수변동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점
- 절대적 세수입 측면에서 특정지역에 법인지방소득세가 집중되어 있을수록 해당지역의 세수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현상이 일부 시군에서 실제로 발생
 - 아래의 <그림 3>은 수원시와 광양시의 법인지방소득세수규모가 그 지역 대표법인기업의 영업실적에 따라 실제로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잘 보여줌
 - 수원시는 삼성전자라는 글로벌 법인기업이 위치해 있어 매년 천억원 이상의 법인지방소득세수를 올리고 있고, 광양시에는 매년 수백억원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포스코가 자리잡고 있음
 - 수원시와 광양시의 법인지방소득세수의 연간변화율과 추세변화율은 예상한대로 (주)삼성전자와 (주)포스코의 전년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과 동행하는 것으로 보임
 - 다른 시군에 비해 법인지방소득세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큰 일부 지역은 이와 같은 특정 대기업의 입지 선택의 결과인 것임

<그림 3> 수원시와 광양시의 대표법인기업의 실적과 세수변동성(2008년~2015년)



주: 당기순이익과 매출액은 전년도 결과치이고 법인지방소득세수는 시점 현재 값임
 자료: 구균철(2017), p15 <그림 8> 인용²⁾

2) 구균철, "법인지방소득세수의 편중성과 변동성 간의 관계",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2권 제1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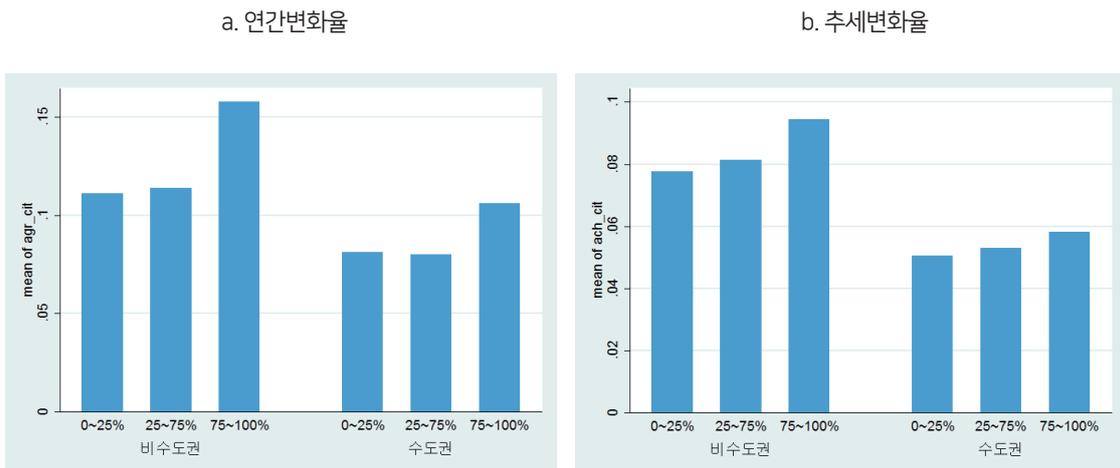


- 법인지방소득세 세수가 집중된 지역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세수변동성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의미이며, 세수의 규모편중성이 세수의 변동성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

○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비중이 높은 시군에서도 법인지방소득세 변동성은 평균적으로 함께 높아지는 경향

- 법인지방소득세 연간변화율과 추세변화율의 절대값으로 나타난 세수변동성의 그룹별 평균값은 법인지방소득세비중이 큰 집단일수록 증가(〈그림 4〉 참조)
- 다시 말해 총지방세수입에서 법인지방소득세가 큰 역할을 차지하는 시군일수록 그 법인지방소득세 자체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사실
- 특히 이러한 그룹간 세수변동성의 증가 경향은 수도권에서보다 비수도권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

<그림 4> 수도권여부와 세수비중에 따른 시군 분류와 세수변동성(2008년~2015년)



주: 1)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도의 152개 시군 중에서 비금융업 상장기업들의 주공장이 위치한 7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였음
 2) 가로축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으로 나누어 각 그룹내에서 법인지방소득세 비중을 상하위 25%와 중위 50%의 하위그룹으로 구분하고 있음
 3) 세로축은 각 하부그룹에 속하는 시군에서의 평균적인 법인지방소득세 변동성을 나타냄
 자료: 구균철(2017), p.19 <그림 11> 인용

○ 법인지방소득세 규모와 비중이 높은 시군에서 증폭되는 세수변동성은 지방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가중

- 도지역과 달리 특광역시의 경우 지방소득세는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이기 때문에 세수불안정성이 크게 완화가



- 광역단위로 갈수록 관내에 있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기업 수가 많고 상호 생산활동의 연계성도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측정할 때보다 낮을 것이기 때문임
- 광역차원에서 보면 업종별로 서로 다른 경기변동주기와 그에 따른 경영성과의 다양성이 법인지방소득세수에 미치는 일부 법인기업의 영향력을 상쇄해 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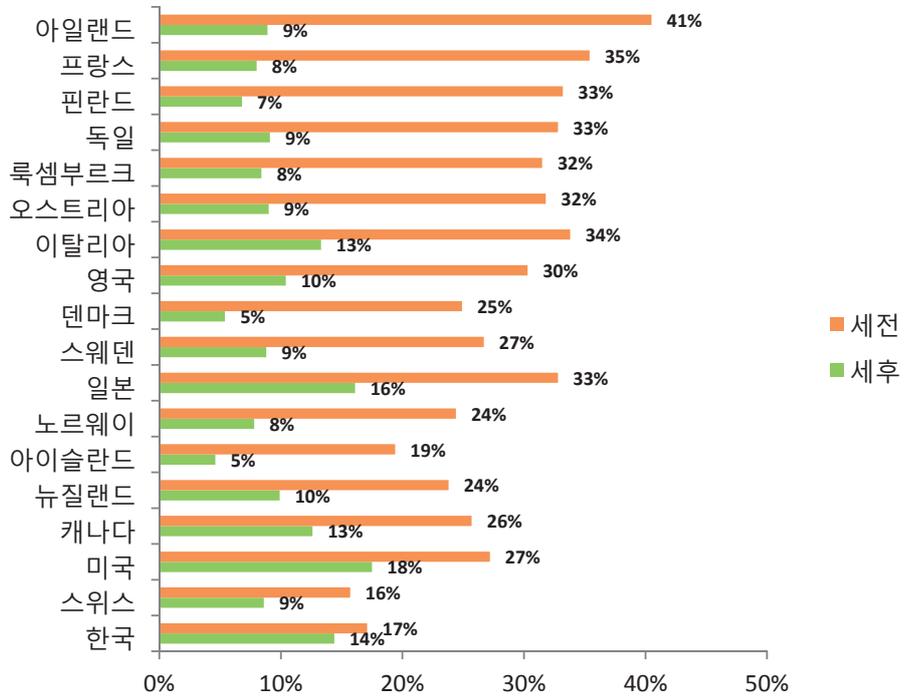
■ 지방소득세 세율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

○ 최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소득재분배정책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제기

- 최근 들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득세 세율인상을 통한 재정확충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크게 증가
 - 일차적으로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세수가 크게 부족해졌기 때문임
 - 일각에서는 수 십 년간 지속된 소득불평등의 확대추세를 멈추지 않고서는 경제불황도 계속될 것이므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소득재분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함
- 소득세의 최고소득구간에 대한 한계소득세율의 인상해야한다는 논의는 대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근거에 기초
 - 국가간 경제협력력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인 OECD와 IMF에서도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소득재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OECD주요국들 가운데 세전빈곤율이 두 번째로 낮지만 세후빈곤율은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그림 5> 참조)
 - 그만큼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계층간 소득재분배 기능면에서 약하다는 의미임
- 둘째, 재정적자 완화와 소득재분배를 위하여 필요한 소득세의 증세여력이 전반적으로 충분
 - 특히, 우리나라는 GDP의 2.7%가량 소득세수를 늘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그림 6> 참조)
 - 소비세제와 고용세제를 포함할 경우 GDP의 7.4%수준까지 세수를 늘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일본과 스위스 다음으로 증세여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우리나라의 재산세제가 역진성이 있다(강성훈, 2015)는 사실을 고려하면 소득재분배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득세수를 확충시키는 것이 정책목적에 부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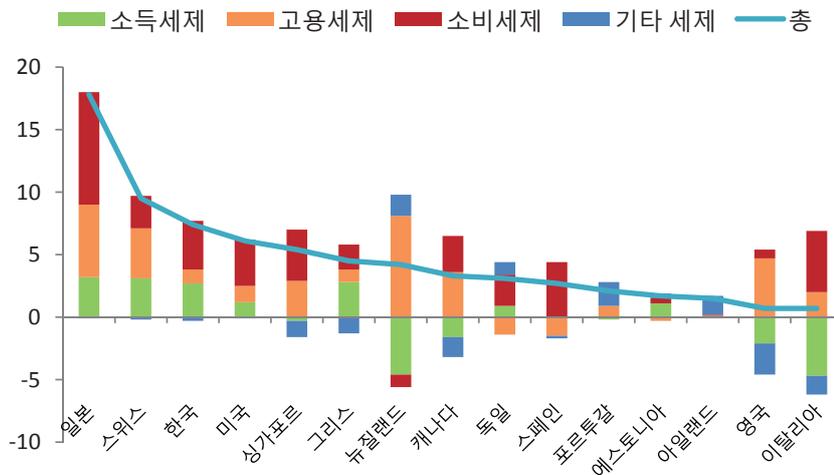


<그림 5> 세전 및 세후의 빈곤율 (2013년)



주: 한국, 미국, 핀란드는 2014년 기준이고 일본, 뉴질랜드는 2012년 자료임
 자료: OECD Stat, Poverty rate before taxes and transfers (poverty line 50%)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DD>

<그림 6> 주요 세목별 세율인상여력 (GDP 대비 백분율)



자료: IMF, Fiscal Monitor 2013 p.53 Table A.2.1 Revenue Gaps



○ 법인세와 관련하여 발의된 최근 법률안들은 대부분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

- 법인세 인상 주장의 배경은 2008년 이후 법인세 인하를 통해 정부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목표가 실패했다는 여론
 - 법인세 인하를 추진한 결과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감세액이 40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반면에 투자와 고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2016년 말 기준 30대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이 753조 6천억 원에 달함
 - 그에 따라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98조8천억원 그리고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95조4천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함

03 지방소득세의 확대 방안

■ 세입분권 강화를 위한 표준세율 재설계

○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소득세로 이양

-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기업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현행 제도하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 최근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적어도 명목적으로 지방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하고 독자적으로 기업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된 이상 이 틀 안에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납세자의 조세부담의 변화가 없도록 국세 소득세 · 법인세 세율과 지방소득세 세율을 동시에 조정
 - 지방정부가 세율을 일방적으로 인상할 경우, 세원의 조세탄력성에 따라 세원자체가 축소되어 중앙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이른바 과세의 수직적 외부효과 발생함
 -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세율인상의 수직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납세자의 조세부담의 변화가 없도록 국세 소득세 · 법인세 세율과 지방소득세율을 동시에 조정하는 것임
- 만약 소득과세를 강화할 경우에 국세보다는 지방소득세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세입분권을 강화하고 정부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완화

■ 법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제도의 실질화

○ 법인기업들이 누리는 집적지대에 대한 과세로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 확립

- 법인지방소득세를 운용중인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율수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실제로 달리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조세인하경쟁으로 인해 세율수준이 하향평준화되는 현상은 부재
 - 조세인하경쟁이 보편적이지 않은 주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집적경제규모가 큰 지역에서 법인지방소득세율이 높더라도 기업들은 집적경제를 통해 더 높은 이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이 역외로 이전할 유인이 적다는 점임
 -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집적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으로 자본이 유입되고 이러한 집적경제라는 구심력이 지역간 세율인하 경쟁압박을 완화하거나 제거해주기 때문임
- 이와 동시에 집적경제가 커질수록 공해나 교통체증과 같은 집적불경제도 함께 증가하게 되어 이를 해결하려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요는 그만큼 더 커지면서 세입확충의 필요성이 대두
-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기업들이 누리는 집적지대에 대해서 집적경제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면 법인지방소득세는 수익자 부담이라는 지방세의 원칙에 부합
- 또한 세율인상으로 마련된 추가적인 세수를 생산적 공공재의 품질 향상과 공급량 확대에 사용하면 투자처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가져와 지역경제성장률도 함께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
- 끝으로 집적지대라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법인지방소득세율의 차이는 일부 지역으로의 자본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길

○ 지역간 재정형평화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율변화를 통해 자체세입을 확충할 유인 부족

-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 제도적 장치들에 의해 지역간 재정형평화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지방정부도 세율인상을 통해 자체세입을 확충할 유인 부재
- 따라서 법인지방소득세의 탄력세율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이 필수
 - 예를 들어, 표준세율 이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여 확보한 추가적 세입은 보통교부세 배분 공식의 기준재정수입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하여야 함

04 맺음말

○ 지방세다운 지방소득세의 비중 확대를 위해선 지방재정의 포괄적 개혁이 필요

- 지방소득세의 가격기능을 확립하기 위해선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용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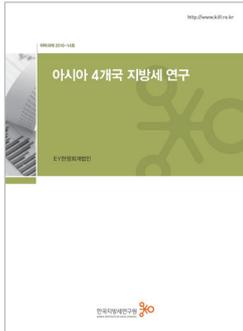
- 첫째, 표준세율 이상으로 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여 확보한 추가적 세입은 보통교부세 배분공식의 기준재정수입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하여야 함
 - 둘째, 시군단위에서의 조세인하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탄력세율의 하한선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상한선은 모두 폐지해 지역 실정에 맞게 과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셋째, 이렇게 지방소득세율 인상으로 추가적으로 확보된 세수입은 지자체의 자체사업 중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사업이나 기업관련 지방공공채와 관련된 세출항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개인과 기업들의 조세저항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
-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통합과 같은 지방재정의 근원적 문제점들을 포괄적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함
- 세입분권을 제고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지방소득세 확대는 지방세수의 수도권 편중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음
 - 만약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면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재정 통합의 일차적 정책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수 확대에 의한 불교부단체의 세수 과잉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연구원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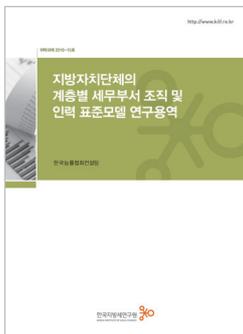
>> 최근 발간물

아시아 4개국 지방세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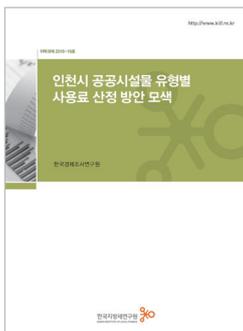
본 연구는 서울시의 선진 지방세시스템 구축 경험을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재정자립 및 지역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스리랑카를 대상국가로 하여 국가별 행정·인프라·조세·재정 등의 분야를 전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지방세 전산시스템 수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 필리핀 마카티시, 스리랑카 콜롬보시 등 지역에서는 서울시 지방세시스템에 대한 일정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층별 세무부서 조직 및 인력 표준모델 연구용역



본 연구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세무조직의 표준화된 조직 및 인력모형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에 세무분야에서 맞이하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한 이슈와 대상 조직의 인터뷰를 통해 개선 이슈를 도출하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무조직의 표준화를 위하여 도시유형을 고려한 군집분석을 통해 18개의 군집을 도출하였으며, 각 군집별 조직과 인력모형을 수립하였다. 전국의 세무조직은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조직명칭 통일화 및 규모를 고려한 직무의 재배분을 하였으며 직무에 따른 업무량을 고려한 인력모형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243개의 조직을 18개로 표준화하였기 때문에 각 조직의 세부적인 특징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모델을 적용할 때에는 기준으로 삼고 각 조직의 특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천시 공공시설물 유형별 사용료 산정 방안 모색



2016년 인천시 공공시설물의 각 시설별 사업수지는 인천여성복지관이 22%, 인천청소년수련관이 38%,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 15%로 산출된 바, 각 시설들이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임을 감안하여도 시설운영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현실화된 사용료 산정을 통하여 인천시 재정에 부담감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시설운영에 재정건전성을 꾀할 수 있음.



» 연구원 동정

재산세 납부 TV · 라디오 광고일정

○ 광고채널

- TV : KBS1 · KBS2 TV 캠페인 송출(전국방송)
- 라디오 : 출 · 퇴근 시간에 청취률이 높은 TBS(수도권), TBN(전국권)

○ 7월 TV스케줄(KBS1, KBS2)

매체	방송순서명 또는 SB기호	SOPT 광고구분	국명	요일	초수	시작일자	종료일자
KBS1	KBS뉴스광장 후 SPOT	7:50	전국권	화,목,금,토,월	40	2017.07.25	2017.07.31
KBS2	생생정보전(뉴스타임 후) SPOT	18:20	전국권	수,금,월	40	2017.07.25	2017.07.31
	슈퍼맨이 돌아왔다 전 SPOT	16:15	전국권	토	40	2017.07.25	2017.07.31
	생생정보 스페셜 후 SPOT	7:20	전국권	일	40	2017.07.25	2017.07.31

※ 방송사 사정(개편/특집전용)에 의해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7월 라디오스케줄 시간 변경(TBS,TBN)

매체	방송순서명 또는 SB기호	국명	요일	초수	시작일자	종료일자
TBS	08:28 김어준의 뉴스공장 3부 후	수도권	1일1회	20	20170725	20170731
	08:55 김어준의 뉴스공장 4부 후	수도권	1일1회	20	20170725	20170731
	20:04 TBS 뉴스 후	수도권	1일1회	20	20170725	20170731

매체	국명	순서	요일	초수	시작일자	종료일자
TBN	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강원,울산,창원,경북, 제주	09:30	1일1회	20	20170725	20170731
	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강원,울산,창원,경북, 제주	11:30	1일1회	20	20170725	20170731
	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강원,울산,창원,경북, 제주	12:30	1일1회	20	20170725	20170731
	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강원,울산,창원,경북, 제주	15:30	1일1회	20	20170725	20170731
	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강원,울산,창원,경북, 제주	20:30	1일1회	20	20170725	20170731

※ 지방본부 사정에 따라 협찬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고시기

세목	부과월	납기	광고일자(7일간)
자동차세	6월	6.16 ~ 30	6.24(토) ~ 30(금)
	12월	12.16 ~ 31	12.25(월) ~ 31(일)
재산세	7월	7.16 ~ 31	7.25(화) ~ 31(월)
	9월	9.16 ~ 30	9.24(일) ~ 30(토)
주민세 균등분	8월	8.16 ~ 31	8.25(금) ~ 31(목)
법인분지방소득세	4월	4월말까지신고납부	4.17(월) ~ 23(일)



지방세 교육

○ 「지방세 제증명 발급 담당공무원 교육」

- 교육대상 :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제증명 발급 담당자 919명

교육일자	대상 자치단체	인원	교육장소
6.13(화)	광주, 전북, 전남, 제주	176명	(광주) 5.18자유공원 대강당
6.14(수)	대전, 세종, 충북, 충남	139명	(청주) 충북 미래여성프라자
6.16(금)	서울, 인천, 경기, 강원	358명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6.20(화)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246명	(대구) 문화예술회관 비슬홀

○ 「법무사 특별과정」

- 1차 : 6.22(목), 2차 : 6.23(금) / 법무사회관(대강당)

- 교육대상 : 법무사, 법무사 유관업무 담당자 220명

○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추적 및 범칙사건조사 등 체납정리실무과정」

- 교육일정 : 6.26(월)~28(수), 2박3일 / 캠프 인재개발원(충남 아산)

- 교육인원 : 약100명

- 교육대상 :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제1차 지방소득세 전문가 양성교육(법인세편)」

- 교육일정 : 7.3(월)~14(금), 2주간 / 1주차 : 한국지방세연구원, 2주차 : KT대전인재개발원

- 교육대상 :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교육인원 : 70 명